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영세 농어업인 등에게 보험료 지원 비율(70%) 명시 >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849)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영세 농어업인 등에게 보험료 지원 비율(70%) 명시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복기왕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 2026. 7. 9.
3. 회 부 일 : 2026. 7.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우, 폭염, 냉해 등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점증하고 이에 따른 농어가의 경제적 피해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재난 위험도가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험료 지원 여력이 부족하여 농어업인 등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좌우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지역 간 보험 안전망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9조).

Ⅲ. 검토의견

1. 영세 농어업인 등에게 보험료 지원 비율(70%) 명시

개정안은 영세 농어업인, 농어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 보험목적물을 경영하는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복기왕의원안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가입자가 영세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따라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현 행	복기왕의원안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 ----- ----- ----- --제1항 및 제2항----- -----. ⑤ 제1항 및 제2항-----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을 두고 있음.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지침인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¹⁾에서 정부의 50% 보조를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로 25~45%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보험가

1)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Ⅱ. 주요내용

3. 지원내용

○ 농작물재해보험 순보험료: 50% 보조

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평균 12.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부담 비율 현황('25)]

보험료지원			자부담
정부	지자체	합계	
50%	25~45%	75~95%	5~25%(평균 12.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부담 비율은 정부가 50%, 지자체가 0~50%로, 자부담은 평균 38.1%로 나타나고 있음.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부담 비율 현황('25)]

보험료지원			자부담
정부	지자체	합계	
50%	0~50%	50~100%	0~50%(평균38.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부담 비율은 정부가 59.3%, 지자체가 평균 25.2%로, 자부담은 평균 15.4%로 나타나고 있음.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부담 비율 현황('25)]

보험료지원			자부담
정부	지자체	합계	
59.3%	평균 25.2%	84.5%	평균 15.4%

※ 정부 보험료 지원은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 수준으로 평균 59.3%를 지원 중

※ 자료: 해양수산부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손실을 보전하여 안정적인 영농·영어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험으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개정안은 재해에 취약하거나 보험료 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업인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 수준을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재해 발생에 따른 경영위험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정부의 보험료 지원 비율 상향에 따른 국비 부담 증가와 지방비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재해보험 등은 정부가 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일정한 가입자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7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적인 국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국비 지원 비율이 상향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지원 수준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농어업인의 실제 보험료 부담 경감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국비 증가에 맞추어 지방비 지원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추가 국비의 일부가 기존 지방비를 대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비 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와 함께 지

방비 지원체계의 변화 및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둘째, ‘농어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농어업재해는 태풍·호우·가뭄·한파 등 재해의 종류에 따라 발생지역과 위험 정도가 다르고, 동일한 지역에서도 재배 품목이나 생육시기 등에 따라 피해 가능성에 차이가 있음. 또한, 기후변화 등에 따라 재해 발생 양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 일정한 지역을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사전에 확정하기도 쉽지 않음.

이처럼 재해위험을 지역 단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높은 보험료 지원률을 적용할 경우, 지역의 지정 범위에 따라 지원대상이 달라지고 유사한 재해위험에 노출된 가입자 간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셋째, 보험료 지원 확대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재해 예방 유인 저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책보험에서 가입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분담하는 것과 함께 보험가입자가 스스로 재해위험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이 있음. 개정안에 따라 정부의 보험료 지원 비율이 70% 이상으로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까지 이루어질 경우 가입자의 실제 부담 수준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음.

이 경우 재해 예방시설 설치나 재배·사육환경 개선 등 보험가입자가 자체적으로 재해위험을 줄이기 위한 비용을 부담할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료 지원 확대와 함께 적정한 자부담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지원 비율 명문화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국고보조율을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한 것과 충돌되며, 지자체 보조를 정부 보조로 대체하더라도 실질적인 농어가 보험료 부담 경감 효과가 낮으며, 전업농 및 우량어가에 대한 역차별 우려와 재해 피해 예방 노력 유인을 약화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²⁾

문 의 처

02)6788-5415

2)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29)